

법령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 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제9조(영상정보 열람요청 시 제출 서류 및 열람 규정)

1. 법적 열람권자 및 열람 절차 : 열람 요청자 에게 열람 필요 사항 10일 이내 통지 하고 열람 일시가 화요일로부터 최장 7일을 초과 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학대 증후가 명시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하거나 열람요청자와 혐의된 경우에는 즉시 열람가능하다.
3. 열람 거부 시 열람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 열람 등 요청자에게 10일 이내 통지 한다.
4. 열람시에는 영상정보 관리 대장, 열람 요청서, 결정 통지서, 비밀유지의무 서약서를 필요로 한다.
  - ①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 또는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일 경우 의학적 소견서나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열람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열람 조치 시 \*보호자가 정당한 요구권이 있는지 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신분증 등을 확인한 후 열람할 수 있다.  
\*보호자란 수급자의 신상 결정 권한이 있는 후견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4촌 이내 친족을 말한다.
  - ③ 관계 공무원이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한 열람 요청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증표(신분증 및 공문서)로 요청하여 확인한다.  
\*노인 담당 관계공무원의 경우에도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노인복지법 제4조의2, 제39조의7, 제39조의9, 제39조의11 등 노인 안전사고 예방 및 학대 예방 활동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열람 요청은 제한된다.
  - ④ 수사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의 열람요청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수사 관련 법령에 의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증표(영장 또는 공문서)로 열람요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 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해당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자체 담당